『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11월 18일

나. 제 출 자 :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 2019년 11월 19일

라. 상정일자 : 2019년 11월 26일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2019년 11월 28일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도시환경국장 문 경 원

나. 제안이유

○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 주요기능이 집적된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별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도시재생을 촉진할 필요가 있어, 뉴딜사업의 속도감있는 실행을 높이고자 혁신지구 제도 도입 (‘19. 11.28 시행)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제3항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를 위한 구미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 승인 신청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함.

다. 주요내용

○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안) 요약

- 위치/면적 : 구미시 공단동 249번지 일원/26,532㎡
- 사업기간 : 2020년 ~ 2022년 (국가시범지구 선정 시)
- 총 예 산 : 416억원(국비 60%, 지방비 40%)

○ 국가시범지구 지정요건 검토서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도시재생 혁신지구 대상지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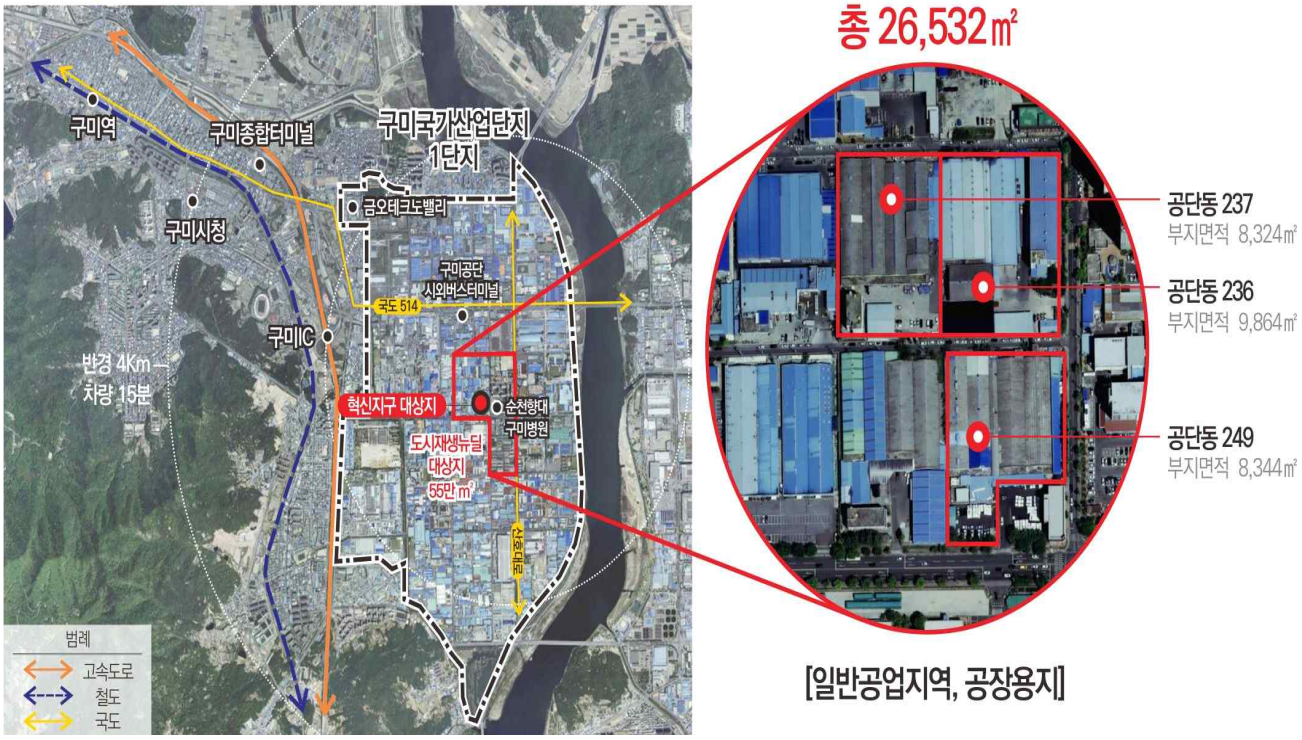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이 수 정

○ 본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제3항 규정에 의거 2019년도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공모를 위하여 구미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 승인 신청 전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것으로,

- 국가시범지구 선정 시 총예산 416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문화 특화, 근로 정주문화 활성화, 산업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여 경제기반이 약화된 공단동의 도시재생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찬성의견 채택

※ 붙임 : 의견서 1부

구미국가산업단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 견 서

□ 주요내용

○ 사업개요

<table>
<tr><td rowspan="5">활성화계획
개요</td><td>■ 위 치 : 구미시 공단동 249번지 일원</td></tr>
<tr><td>■ 면 적 : 26,532㎡</td></tr>
<tr><td>■ 사업기간 : 2020~2022 (국가시범지구 선정 시)</td></tr>
<tr><td>■ 총예산 : 416억원 (국가시범지구 선정 시)
– 재정보조 : 416억원 (국비 60% / 지방비 40%)
※ 중앙부처 협업사업 및 지자체 사업 제외</td></tr>
<tr><td>■ 배경 및 목적
– 2018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 대기업의 타지역 이전에 따라 산단 경제기반 쇠퇴 발생으로 지역경제 거점 상실 우려 (공장가동률 56.5%, 공실률 44%, 1990년대비 청년 인구 89% 감소)
– 구미산업단지의 주요 전기·전자산업의 공동화 현상 심화, 대기업 의존형 산업구조의 한계, 기업지원서비스 등 정주환경 인프라 부족에 따라 구미산업단지의 자립력 상실 우려
– 1,000여개 뿌리산업기반의 부품소재 제조기업의 생태계 회복을 위해 스마트산업단지 및 구조고도화 사업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신산업 육성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 근로자 정주여건 회복으로 산단 내 시너지 효과 가능</td></tr>
<tr><td>■ 일반현황
– 도시계획/지목 : 일반공업지역 / 공장용지
– 관련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부지개요
<table>
<tr><th>위치</th><th>면적</th><th>소유자</th><th>개별공시지가(원/㎡)</th></tr>
<tr><td>공단동 237</td><td>8,324㎡</td><td>㈜동광화섬</td><td>210,000 ('19. 1. 1. 기준)</td></tr>
<tr><td>공단동 236</td><td>9,864㎡</td><td>㈜성광</td><td>215,000 ('19. 1. 1. 기준)</td></tr>
<tr><td>공단동 249</td><td>8,344㎡</td><td>㈜성원직물</td><td>228,100 ('19. 1. 1. 기준)</td></tr>
<tr><td colspan="4">※ 용도전환 : 산업집적법 제45조 2항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수립 필요</td></tr>
</table></td></tr>
</table>

□ 의견사항

○ **찬성의견 채택**으로,

- 구미시 공단동 249번지 일원은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서, 대기업의 타 지역 이전에 따른 경제기반이 쇠퇴하여 산업단지의 재생이 필요한 지역이므로 혁신지구사업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되면 실질적 도시재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